-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가족 상담 또는 중재 서비스
-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성인(숙모, 숙부, 조부모, 또는 가족의 친구)과 함께 거주
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
-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을 허용하는 비공식 계약을 체결

자립 팜플렛

이 팜플렛은 자립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.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.

Form Adopted by the Judicial
Council of California
MC-301 K (Korean) (New January 1,1995)

자립이란 무엇일까요?

자립(emancipation)이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부모나 후견인의 양육권 및 감독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(캘리포니아 주의 성년은 18세입니다.) 자립한 자녀는 다음과 같은 일을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:

- 치료에 대한 동의
- 노동 허가의 신청
- 학교나 대학에 입학

이러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.

자녀는 자립을 했더라도:

-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.
-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.
-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 관할 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

법정 후견인이 있는 경우:

이 팜플렛에서 사용하는 부모 또는 부모들이라는 호칭에는 법정 후견인이나 후견인도 포함됩니다.

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요?

자립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**세 가지** 방법이 있습니다:

1. 결혼(이것은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

판사가 자립 신청을 승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판사가 심리를 한 후에 또는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을 승인하면, 신청자는 서류를 다시 서기 사무소로 가지고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. 서기는 자립 선고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자가 자립의 증거로 보관할 사본을 발급합니다.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에 이 사본을 고용주, 집주인, 의사, 학교 교직원 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차량국(DMV)에 통지하기를 원하면,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에 대한 자립 미성년자 신청서(MC-315) 양식을 작성하여 자립 선고의 인증 사본과 함께 DMV에 제출하십시오.

자립은 영구적일까요?

자립은 보통 영구적입니다. 그러나, 신청에 포함된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, 자신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 자립 선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

자립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?

자립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 자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:

-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도록 날짜를 정합니다.

서기는 판사 명령의 배서 보관 사본을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.

심리를 열지 않는 자립 선고

판사가 모든 통지 및 동의 요건이 충족 및 면제되고 자립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심리를 열지 않고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심리 일자 결정 및 통지

판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지 및 심리 일자 결정 명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가 열립니다. 판사가 이 신청을 심리에 부치라고 명령하면 서기가 지방검사에게 심리 날짜 및 시간을 통보합니다. 판사는 자녀에게 부모 및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가 열리는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판사는 자립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부모가 적절한 통지를 받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.

통지는 판사가 준 명단에 포함된 각 사람에게 자립 신청의 사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. 심리 날짜가 결정된 후 가능한 한 빨리, 18세 이상 된 성인이 신청자를 대신해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송하고 송달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2. 군대 입대(이것은 부모가 동의하고 군대에서 수락해야 합니다.)
3. 판사의 자립 선고

이 팜플렛에서는 판사의 선고에 의한 자립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. 판사에 의해 자립을 선고 받으려면 판사에게 **다음의 모든 요건** 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:

1. 연령이 14세 이상 되었습니다.
2. 부모의 동의 또는 묵인을 받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. (부모가 자녀가 떨어져서 사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.)
3. 혼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4. 불법 활동이 아닌 수입원이 있습니다.
5. 자립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습니다; 자신을 위해 유리합니다.

어떻게 판사에 의해 자립을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?

특정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법원 서기 사무소에서 공백 양식을 받아 작성하십시오. 작성할 필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Petition for Declaration of Emancipation of Minor, Order Prescribing Notice, Declaration of Emancipation, and Order Denying Petition (MC-300) (미성년자에 대한 자립 선고 신청, 통지 명령, 자립 선고 및 명령 거부 신청)
- Emancipation of Minor -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(MC-306) (미성년자의 자립—수입 및 지출 진술서)

- Notice of Hearing (MC-305) (심리 통지서)
- Declaration of Emancipation of Minor After Hearing (MC-310) (심리 후 미성년자 자립 선고)

자립 신청(Petition)

자녀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미성년자에 대한 자립 선고 신청 양식(MC-300)을 제출해야 합니다. (지역 서기 사무소에 확인하여 법원의 어느 부서가 자립을 취급하는지 알아두십시오. 자녀가 소년법원의 피보호자 또는 피후견인이면 신청을 소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) 자녀만이 법원에 자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녀는 확인 가능한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. 또한, 미성년자의 자립—수입 및 지출 진술서 양식(MC-306)을 작성하여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.

제출 수수료 또는 면제

자립 신청을 제출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서기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.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 신청서 양식과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 신청서에 대한 명령 양식을 포함하는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으면, 자립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 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 또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또는 당연히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미성년자의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.

양식의 작성

-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는 정자로 기재하거나 타자하십시오.
- 신청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.

- 생활 상황, 자립을 원하는 이유, 재정적인 자립 방법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.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부양할 방법을 설명하십시오. 또한, 고용주나 집주인의 편지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- 부모나 후견인이 거주하는 곳을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 부모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부모가 거주하는 곳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.
- 부모가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부모가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로부터 심리 날짜를 받아 부모에게 심리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.
- 부모가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으나 양 부모 또는 한 부모에게 이 신청에 관해 통지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유를 기술하고 법원에 부모에 대한 통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.

신청 및 다른 양식의 제출

양식들과 필요한 모든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부모의 서명(가능한 경우)을 받은 후에 양식과 첨부 서류를 법원 서기 사무소로 가지고 가서 제출하십시오. (공백 양식을 받을 때, 서기에게 각 양식에 대해 사본을 몇 부씩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.사본 한 부는 반드시 자신이 보관해야 합니다.) 법원에 가서 서기에게 자립 신청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서기에게 서류를 보여주십시오. 서기는 신청을 한 부 이상 보관합니다. 서기는 신청을 판사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신청자가 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.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, 판사는

- 신청을 승인하거나; 또는
- 신청을 거부하거나; 또는